

45.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2년 9월 2일
- 발의의원 : 김정옥, 이태손, 권기훈, 이동욱, 조경구, 전경원  
손한국, 김지만, 이재숙, 정일균, 김재용 의원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2년 9월 20일), 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정옥 의원)

- 제정 이유
  - 대구시의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전담 기구인 「대구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목적과 위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대구시 노동권익센터 운영사업과 사무의 위탁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수탁자의 의무 및 지도감독(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수탁자의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7조)
- 수탁자의 직원채용,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제관)

#### □ 적법성 여부

-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이를 수행할 전담 기구인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책무로 근로자의 권리보호,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과 이에 대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내용이나 체계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위치)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의 설치와 운영으로 규정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내에 두도록 했음.
- 안 제3조(운영사업)에서는 센터가 수행할 사업으로 ①노동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②노동 관련 법률·세무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 지원, ③노인, 여성,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

지원 및 근로조건 개선 사업, ④노동권의 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사무의 위탁)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이를 노동 사무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5조(수탁자의 의무)에서는 수탁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규정의 제·개정 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지도감독)에서는 시장이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관련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였음. 또한, 보고·조사·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를 부여했음.
- 안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에서는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센터의 관리·운영을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고,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음.
- 안 제8조(직원채용)는 수탁자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공개 채용 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수탁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22년 6월 준공된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의 사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탁 운영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이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또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센터의 주요 목적사업으로 여성, 노인,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향상을 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임.
- 대구시는 센터 건립과 조례 제정을 계기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시책 개발과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향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센터를 운영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선정하여 센터 운영의 취지를 살리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참고 1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현황

## □ 센터 개요

- 시설위치 : DTL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 2층(달서구 조암로 13)
- 시설규모 : 약 53평(176.4㎡) / 사무실(1)·회의실(1)·상담실(2) 등 구비
- 조직구성 : 센터장 외 3명(팀장 1, 직원 2)
- 사업예산 : 7.5억원(시비) \* 시설조성 2, 사업운영 5.5
- 추진경과 : 타당성 연구용역('21.12월) → 계획수립('22.12월) → 사업운영('22.7월~)

## □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① 정책연구사업	· 취약계층 근로자 실태조사, 정책토론회 등 - 모빌리티 플랫폼노동자(음식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가정관리사 - 국내외 사례분석, 설문조사(4개 직종 200여개 항목), 심층면접·분석을 통한 정책대응방안 연구·제안
② 법률지원사업	· 노무·법률상담, 침해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등 -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변호사 1, 노무사 2, 세무사 1) - '22.8월 현재 총 25건 상담(노무 22, 법률 3) 및 상시 일반생활 법률상담 진행
③ 교육사업	· 노동인권·법률·산업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강사인력풀 구성(노무사협회), 영역별·대상별 영상교육콘텐츠 제작 등
④ 인식개선사업	· 권리보호 캠페인,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등 - 청년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20명) 및 홈페이지·유튜브·SNS 등 활용 홍보 (33개 콘텐츠 제작), 홍보리플릿 제작 및 캠페인 전개 등
⑤ 기획협력사업	· 모범사업장 발굴·협약, 노사상생프로그램 운영 등 - 1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노사가 함께 만드는 소통협력 기획프로그램」 공모 - 심사 결과에 따라 인당 30천원 정도 프로그램 진행비 지원 예정

## 참고 2

## 타 시도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사례

구분	인력	세부인원	운영주체	2022예산 (백만원)	면적 (㎡)	설립근거	운영방식	설치년도
서울	23명	센터장1, 팀장 4, 팀원 18 * 휴노동자쉼터 5개소 14명 별도	(사)한국비정규 노동센터	3,582	264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민간위탁	2015
부산	15명	센터장1, 팀장 4, 팀원 10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1,802	283.25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민간위탁	2020
인천	11명	센터장1, 팀장 3, 팀원 7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951	180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민간위탁	2022
대전	7명	센터장1, 팀장·팀원 6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730	230.7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조례	민간위탁	2015
울산 (노동인 권센터)	5명	센터장1, 팀장·팀원 4	(재)울산일자리 재단	422	148.0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공공위탁	2020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 안 제4조 제1항의 노동 사무 관련 전문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의미가 불명확한데, 어떤 의미인지?	○ 노동 사무 관련 전문기관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는 의미임.

## 5. 토론요지

-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함.

## 6. 수정안 요지

- 제4조 제1항 본문 중 “노동 사무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노동 사무 관련 전문기관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출석위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 10. 첨부서류

- 위원회 수정안 : [붙임1]

[붙임1] : 위원회 수정안

##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중 “노동 사무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노동 사무 관련 전문기관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u>노동 사무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u> 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의 위탁) ①----- ----- ----- <u>노동 사무 관련 전문기관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u> -----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

제3조(운영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에 관한 사업
2. 노동 관련 법률·세무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3. 노인, 여성,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업
4.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
5.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사무 관련 전문기관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센터를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노동권익센터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채용) 제4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노동 사

무 관련 전담 인력을 공개 채용해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제도 개발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도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기초자치단체(구·군) 및 노동·경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및 예산 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고충처리, 상담 활동 지원 사업
2. 국내 및 국제사회의 선진적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
3. 경영단체와 노동단체 간의 협력관계 유지 및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

4.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5. 근로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6.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리보호, 근로자 복리증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 유지·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